

---

## 특별발표

---

### 의료보험과 관련한 방사선사의 권리 및 인력관리 제고

명지종합병원 방사선과

정 순 규

인력관리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행, 통제하는 과정이며, 권익은 조직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선사의 인력관리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자들로 좁게는 소속직장이나 병원 내에서 관리하고, 넓게는 방사선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권익의 보장은 의료기사법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법규는 의료기사단체에 소속된 각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치이지만,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제 3자 보장제도」같은 관행이 병행되고 있다.

「제 3자 보장제도」같은 내용이란 의료보험단체로부터 인력의 변동사항 및 보험급여와 관련한 인력, 업무량 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감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부록 제 1 편의 검사의뢰시 검사료 청구요령이나 제 4 편의 방사선진단수가 조건표 등 일반적인 내용이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비하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와 관련한 제 5 편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인정,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부록 제 5 편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 3항에 재활 및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급여인정 신청서에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의 인적사항과 사용장비 및 시설내역을 상세히 기재, 신청·인정확인을 위하여 되도록 규정해 놓고, 동시에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14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본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병원재정과 직결되는 보험급여에 제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 해놓고 있으므로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필요요원으로 선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을 병원경영자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1) 인력관리에 번거러움이 따르기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2) 보험급여 청구에 제약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 기법이 요구되며 3) 인사관리 등에 사용자의 사견이 배제되어야 하는 구속력이 따르기 때문에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상반되는 견해를 갖게 되므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가장하여 부록 제 5 편과 같은 규정이 방사선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전제하여 우리업무와 결부시켜 생각해 본다면,

첫째, 방사선사 1인에 대한 업무내용별 합당한 업무량을 근거로 적정인력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둘째, 의료기사법 제3조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해 놓고 있는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권과 관리 등이 고유업무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고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고,

셋째, 인력·시설·장비현황 및 변경사항 등이 적시에 관계기관에 보고되므로써 전국의 회원 동태는 물론 방사선장비 운용에 관한 통계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의 경우처럼 업무량의 산출과 적정인력 수용, 그리고 의료보험급여가 제도적으로 관리될 때에 대다수 병원의 경우와 같이 절대필요 요원으로 대우받게 될 것임을 자명하다.

결론으로 고려해 보고자하는 과제는 “왜 같은 의료기사법에 소속된 단체로서 「제3자 보장제도」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부여되지 못했을까?”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이 특정 직종 단체에 부여될 때까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재활 및 물리치료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외적인 권익수단으로서의 외실 추구라고 한다면 보수 교육 및 능동적인 참여 독려는 내적인 권리수단으로서의 내실 추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와같은 두 가지의 권리추구수단은 똑같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성취시켜야 할 큰 숙제이다.

이제부터라도 방사선사 개개인은 내실추구에 앞장 설 수 있는 자세확립을, 그리고 대한방사선사 협회 집행부는 「제3자 보장제도」와 같은 외실추구를 위한 실천방안 등을 본 주제를 통하여 연구해 보자고 제안한다.